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57,398,948	28,721,968
일반회계	709,860,924	21,295,828
특별회계	247,538,024	7,426,141
기타특별회계	247,538,024	7,426,1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057,854	391,736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947,403	28,422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229,308	6,87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7,884	3,537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349,399	220,48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631,721	18,952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72	65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5,863,429	475,903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08,579,380	6,257,381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59,474	22,78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업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